

의안번호	2209435
의 퇴 인	전진숙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.
추계번호	25F195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
법인세 감면율 조정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
1	안 제121조의33제2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－ 개정안은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%의 범위에서 감면율을 가중하려는 것임 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현행</th> <th>개정안</th> </tr> <tr> <td>감면율</td> <td>사업소득 발생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 + 그 후 2년간 50% 감면</td> <td>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10% 범위에서 감면율 가중</td> </tr> </table>	구분	현행	개정안	감면율	사업소득 발생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 + 그 후 2년간 50% 감면	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10% 범위에서 감면율 가중	
구분	현행	개정안							
감면율	사업소득 발생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 + 그 후 2년간 50% 감면	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10% 범위에서 감면율 가중						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제2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기회발전특구¹⁾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법인·소득세 감면율을 10%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인·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21조의33 제2항)
 -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함
 -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: 대전광역시(유성구), 부산광역시(동구·남구 등), 대구광역시(달성군·북구 등), 울산광역시(울주군 등), 세종특별자치시(연서면 등), 강원특별자치도(강릉·원주·영월·동해 등), 충청남도(보령·예산·서산 등), 충청북도(진천·제천·보은 등), 전북특별자치도(김제·전주 등), 전라남도(광양·여수 등), 경상북도(포항·구미·상주 등), 경상남도(고성·통영 등),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)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,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의 수도권과의 거리에 관하여 구분된 자료, 거리별로 가중될 감면율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
 - 개정안은 수도권과의 거리 측정 기준, 수도권과의 거리별로 감면율을 가중하는 요건, 가중되는 감면율의 규모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정안만으로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

1)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, 세제와 재정 지원, 정주 여건 개성 등을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